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 1) 아이돌봄사의 직무 중 아동학대 발견에 따른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주의의무로서 감염병 감염 사실 알림 및 돌봄활동 중지의무를 신설함
- 2)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 3)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이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 4)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 5) 건강진단 수검 의무가 있는 아이돌봄사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 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설함
-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 5)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다. 그 밖의 정비사항

- 1)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던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6조의3제2항)
- 2)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을 신설(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을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을 직무와 무관한 이유로 침해하는 행위 금지

5. 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 시 이용자 가정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린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회신서는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제1호”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5.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6.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제4항(중전의 제2항)제1호 및 제7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하 “자격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1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1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격관리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는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이돌보미”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로,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아이돌보미”를 “소속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지 않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관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육아도우미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육아도우미 본인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의 제목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는 별표 2의2의 기준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로,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및 관리 지원

제6조의4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

봄서비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을 “단체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변경하는 다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으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으로,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기준”으로, “서비스기관으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기관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 등록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3의3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⑥ 제5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명단과 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⑧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2. 부상 또는 감염의 경우: 3천만원

3. 부상 또는 감염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4. 부상당하거나 감염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당하거나 감염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

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이용”을 “이용(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서비스기관의 명칭”을 “명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서비스기관의 휴업”을 “휴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정 취소·등록 취소 이력

제9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연락처 및 경력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다른 아이돌보미에 대한”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

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구분에 따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3.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4.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11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정 취소 등)”을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 평가”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이돌보미에”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제3조제4항”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3조의4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에게 제1항”을 “장에게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을 “아이돌봄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평등가족부 인터넷”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제16조의 제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운영”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3년마다(매 3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를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업무정지”를 “사업정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3호	지정취소		
-------------------------------------	--------------	------	--	--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부터 별표 3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관련)

1. 시설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강의실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나.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비품을 갖출 것 다.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냉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것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양호실과 그 밖에 교육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2. 인력 배치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구분	자격기준
전임교수 또는 외래교수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 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교육에 적합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중앙지원센터 운영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수행 인력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및 자료발간, 사업 매뉴얼 및 교육 교재 등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나. 아이돌봄사 양성·보수교육 관리, 종사자 교육, 사업평가 지원 및 아이돌봄사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는 아이돌봄 인력양성 담당인력 3명 이상 다. 아이돌봄사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노무 업무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마.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회의실 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장비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봄 인력수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광역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수행 인력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아이돌봄사(법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계약 체결, 급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아이돌봄사 채용·급여·보험관리 및 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인력 1명 이상 나.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 조정,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법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인력 1명 이상 다. 지역 내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원하는 담당인력 1명 이상 라. 광역지원센터의 조직·예산·회계 등을 관리할 담당인력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지역 내 아이돌봄사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회의실 다. 노무상담을 위한 상담실
장비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추는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2. 인력 배치기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그 밖의 종사자	가.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봄사	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기 준
기관 운영	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 신고할 것 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성실히 제출할 것 라.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협조요청에 성실히 따를 것
인력 운영	가. 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이돌봄사를 배치할 것 나. 아이돌봄사에게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서비스 운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나. 보호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에 대해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라. 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1. 조직형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자본금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설기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기준
시설	가. 사무실 1) 서비스의 연계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추는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가정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다만, 홈페이지 등 별도의 수단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인력기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기준
전담인력	가.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그 밖의 종사자	가.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8조의2제8항 관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기준
기관 운영	가.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 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성실히 제출할 것 라.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협조요청에 성실히 따를 것 마.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규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것
인력 운영	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나.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권고사항)
서비스 운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나. 보호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에 대해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라.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재지정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1호	2년
2. 삭제		
3.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3호	1년
4.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4호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년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6호	6개월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7호	1년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8호	1년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9호	6개월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

구 분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등 아동 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센터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센터장의 성명	생년월일	
	운영 예정 연월일		
업무 인력	아이돌봄사 채용 및 복무관리 담당		명
	아이돌봄사 수급 및 운영관리 담당		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서비스 홍보 담당		명
	조직·예산·회계 등 관리 담당		명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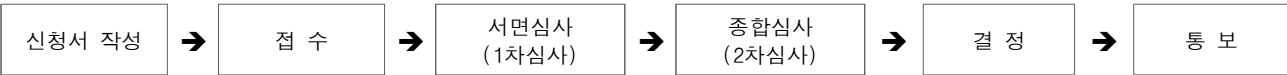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이돌봄사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조회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상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육아도우미로 활동 또는 육아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신청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 서류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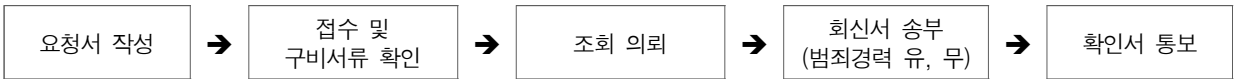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

- 1.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죄
-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처리절차



요청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수사기관의 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10mm×297mm[백상지 80g/㎡]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활동예정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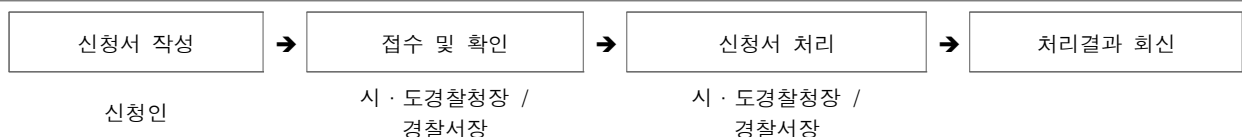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illegible]

[] 아이돌봄사
[] 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활동예정자)

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요청인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기관의 명칭	
		소재지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기관의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1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활동예정자)

(앞쪽)

조회 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결격사유 유무	[] 결격사유 있음	[] 결격사유 없음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시 · 도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 3.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illegible]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 아이돌봄광역 지원센터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기관의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결격사유 유무	[] 결격사유 있음 [] 결격사유 없음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아이돌봄사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발 급 30일 재 발급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3.5cm×4.5cm)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발급 신청 시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가능) 1부.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교육 면제자: 해당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재발급 신청 시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성명이 바뀐 경우만 해당)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에 따른 범죄경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자격 검정



발급 결정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아 이 돌 보 사 자 격 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자격취득일:

사 진
3cm×4cm

위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기관 정보	사업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성명(전담관리자)		
계좌 정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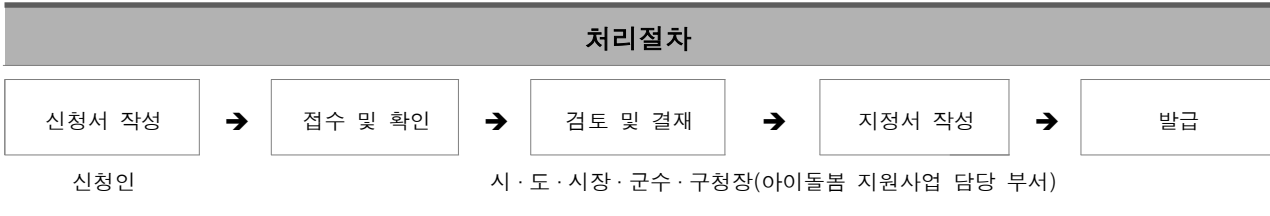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앞쪽)

제 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법 인 명 :
4. 대 표 자 :
5. 지정기간 : . . . ~ . . .

위 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____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등록번호		
	③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조직 형태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⑦자본금				
인적 사항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 전담 인력 및 그 밖의 종사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각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3.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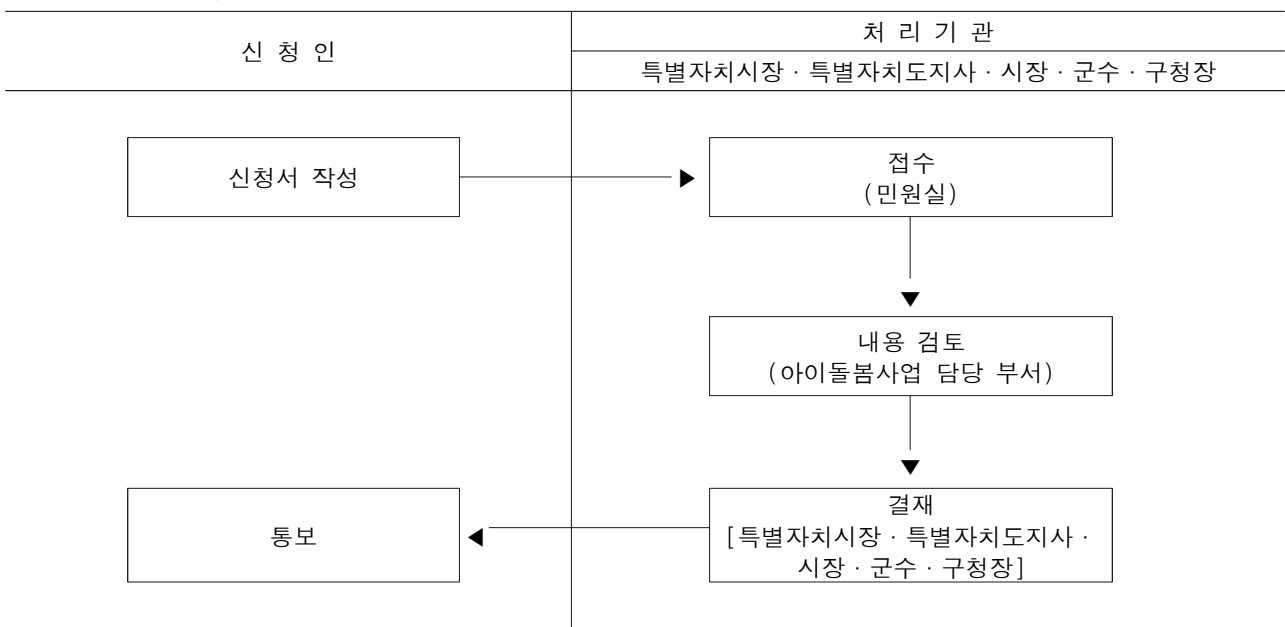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상호와 법인(또는 단체 등)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또는 단체 등)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
2. ⑤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3. ⑦란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등록번호
	③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조직 형태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⑦변경사항	⑧변경 전	
	⑨변경 후	
⑩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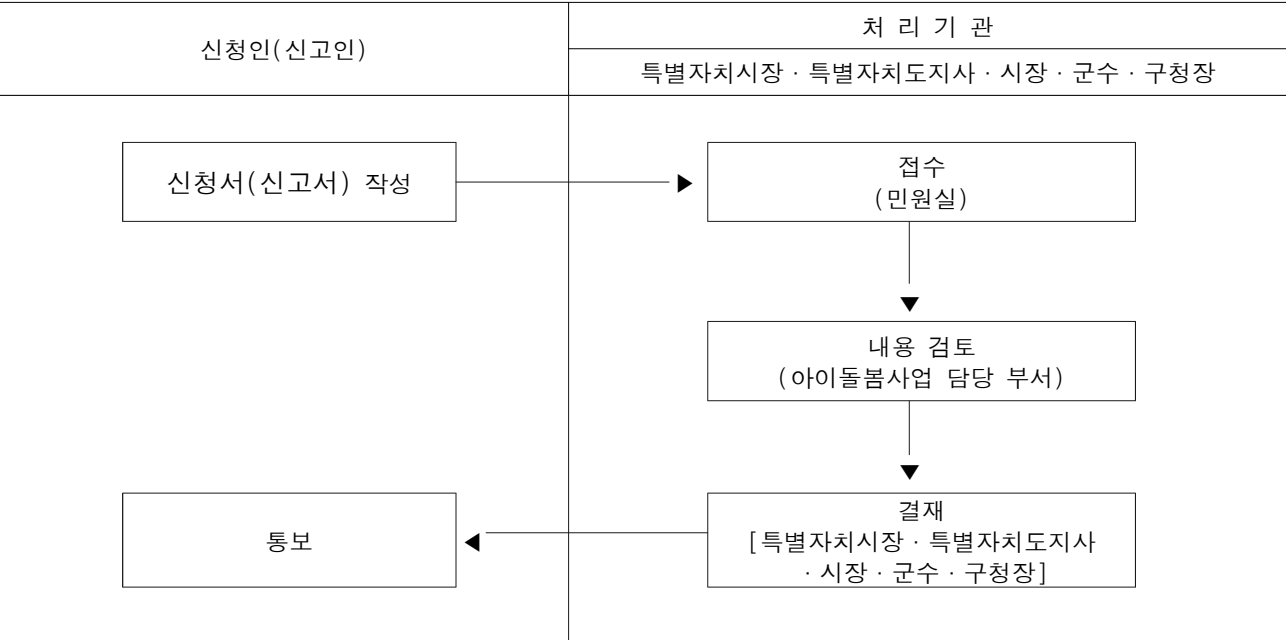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등록증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⑩란은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휴업

[] 휴업기간 연장

[] 업무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신고인	상호 및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	--

신고내용	[] 휴업	휴업기간	
			~ (일간)
	[] 휴업기간 연장	연장 휴업기간	
			~ (일간)
	[] 업무재개	업무재개일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업 []휴업기간 연장 []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폐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및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 연월일			
폐업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 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아동학대 발견 시 <u>아동보호전문기관</u> 등에 신고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u> , <u>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또는 <u>수사기관</u>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u>아이돌보미</u> 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u>	② ----- <u>아이돌봄사</u> ----- -----. 1. · 2. (현행과 같음) 3. <u>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을 직무와 무관한 이유로 침해하는 행위 금지</u>
4. (생략) <u><신 설></u>	4. (현행과 같음) 5. <u>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 시 이용자 가정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린</u>

<신 설>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지

제2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회신서는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1호-----
 ----- 아이돌봄사-----
 -----.
 ---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

 ④ -----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

1. 아이돌봄사-----
--
2. ~ 6. (현행과 같음)
7. -----

----- 아이돌봄사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5.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

6.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 제4항-----
----- 아이돌봄사-----

-----.

제3조의2(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하 “자격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1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1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

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격관리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아이돌보미-----

-----.

② -----

-- 신청해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급해야 ----

-----.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제출해야 ----.

제6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는 법 제10조제1항-----
----- 한다)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시간-----
-----.

② -----

----- 법 제11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③ ----- 아이돌봄사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수 있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봄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봄사-----

-----.

④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 해당 기관---.

⑤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지 않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

<신 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
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
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자
격관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
다.

⑥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활
동하려는 육아도우미가 다른 사
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육아도우미
본인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 소속 아
이돌봄사-----
-----.

⑧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의 업무)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중앙지원

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

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는 별표 2의2의 기준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삭 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삭 제>

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략)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생략)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⑤ -----

-----.

1. 아이돌봄사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5.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6. (현행과 같음)

7. 아이돌봄서비스(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 아이돌봄사(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신 설>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
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생 략)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

--

8.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컨설팅 및 관리 지원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아이돌봄사(지정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
이돌봄사에 한정한다) --- 아
이돌봄서비스(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

----- 단체를 -----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

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

----- 변경하는 다음 -----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

②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청해야 -----
-----.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기준 ----- 아이돌봄서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기관의 이전

2. (생략)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스제공기관으로 -----
-----.

④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
해야 -----
--.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

----- 제출해야 -----.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 등록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3의3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사

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⑥ 제5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명단과 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⑧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2. 부상 또는 감염의 경우: 3천만원

3. 부상 또는 감염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4. 부상당하거나 감염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당하거나 감염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 또는 감염이 원인이

<신 설>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3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다. (생략)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이용(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한정한다)-
--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가. 명칭-----

나. 시설 -----

다. 휴업 -----

라. 지정 취소·등록 취소 이력

<삭 제>

②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
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
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
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
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
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
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
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
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
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 아이돌봄
사 또는 육아도우미-----

1. 성명, 연락처 및 경력

<삭 제>

2. 아이돌봄사-----
--

3. -----
-- 따른 -----

4. -----
-- 제3호-----

③ ----- 아이
돌봄서비스----- 아이돌
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u>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u> <u>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u> <u>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u> <u>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u> <u>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u> <u>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u> <u>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u> <u>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u>	<u>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u> <u>3.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u> <u>4.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u> <u>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u> ④ ----- ----- <u>아이돌봄서비스</u> <u>스</u>----- <u>아이돌봄사 또는</u>
---	---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
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정 취소 등) <신 설>

<신 설>

는 육아도우미-----

-----.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아이돌봄사

-----.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
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3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
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성평등

③ -----
----- 법 제17조제2항-----

-----.

④ -----
----- 법 제17조제2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을 취
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평가)

① -----

-----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 -----.

②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관리·평가-----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에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아이돌봄서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

비스제공기관 -----
----- 다음 -----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
-----.

④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

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
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
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
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
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
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
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에게 제1항-----

-----.

④ -----

사람-----

-----.

⑤ (생 략)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생 략)

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해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u>	2. <u>아이돌봄사의</u> ----- --
3. <u>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u>	3.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 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성평등 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u> 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 ----- ----- <u>성평등 가족부의 인터넷</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u>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 간</u>) 법 제32조에 따른 <u>아이돌보 미 자격정지 기준</u> 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u>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 준</u>) ----- <u>아이돌봄 사</u> -----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 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 표 3에 따른 <u>서비스기관의 시 설, 인력, 운영 등 기준</u> 에 대하 여 <u>2014년 1월 1일</u> 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u> 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u>하여야 한다</u>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u>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의 지정·운영</u> ----- -- <u>2026년 1월 1일</u> ----- <u>5년마다(매 5년</u> ----- ----- ----- --- <u>해야 한다</u>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② -----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제4조에 따른 <u>아이돌보미</u>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 3. 삭제 4. 제12조에 따른 <u>서비스기관 지정취소</u> 등	----- ----- ----- ----- ----- <u>해</u> <u>약</u> -----. 1. ----- <u>아이돌봄사</u> ----- ----- 4. ----- <u>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u> ----- -----
---	---